

특수건물 화재보험 요율 적용방법

운동 혁

<본 협회 보험2부 차장>

이번호부터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한 적용실례를 살펴본다.

예 1. 사무실 전용인 4층 이상 건물

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0
건물구조 :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5층
보험가입금액 : 750,000,000 원

물 건 : 일반물건
등 지 : 2등지
적용 건물급수 : 1급
요건 기본요율 : 0.135 %
총수할증 : 기본요율의 2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0.135\% \text{ (기본요율)} + 0.0027\% \text{ (총수할증)} = 0.1377\% \text{ (적용요율)}$$

($0.135 \times 2\% = 0.0027\%$)

○ 화재보험료

$$750,000,000 원 \times 0.1377\% = 1,032,750 원$$

..... 1)

특수건물 할인 25%

$$1,032,750 원 \times 25\% = 258,187 원$$

..... 2)

$$1) - 2) = 774,563 원$$

..... 3)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의 7%

$$774,563 원 \times 7\% = 54,219 원$$

..... 4)

○ 총보험료 (3+4)

$$774,563 원 + 54,219 원 = 828,782 원$$

화재보험료 신체보험료 (총보험료)

가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다방이 있는 경우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0.135\% \text{ (기본요율)} + 0.0027\% \text{ (총수할증)} + 0.055\% \text{ (다방할증)} = 0.1927\% \text{ (적용요율)}$$

○ 화재보험료

$$750,000,000 원 \times 0.1927\% = 1,445,250 원$$

..... 1)

특수건물 할인 25%

$$1,445,250 원 \times 25\% = 361,312 원$$

..... 2)

$$1) - 2) = 1,083,938 원$$

..... 3)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0%

$$1,083,938 원 \times 10\% = 108,393 원$$

..... 4)

○ 총보험료

$$1,083,938 원 + 108,393 원 = 1,192,331 원$$

화재보험료 신체보험료 (총보험료)

나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된 다방이 있는 경우 (다방부분 보험가입금액 : 70,000,000 원)

계산

○ 화재보험료

$$\text{다방부분} : 70,000,000 원 \times 0.1927\% \times 75\% = 101,167 원$$

..... 1)
(특수건물 할인 25%)

$$\text{그 외 부분} : 680,000,000 원 \times 0.1377\% \times 75\% = 702,270 원$$

..... 2)

○ 신체보험료

다방 부분 : 화재보험료의 10%

그 외 부분 : 화재보험료의 7%

$$\text{다방부분 } 101,167 \text{ 원} \times 10\% = 10,116 \text{ 원} \dots ③$$

$$\text{그 외 부분 } 702,270 \text{ 원} \times 7\% = 49,158 \text{ 원} \dots ④$$

○ 총납입보험료 ①+②+③+④

$$101,167 \text{ 원} + 702,270 \text{ 원} + 10,116 \text{ 원} + 49,158 \text{ 원}$$

$\boxed{\text{화재보험료}}$ $\boxed{\text{신체보험료}}$

$$= 862,711 \text{ 원} (\text{총납입보험료})$$

이같이 방화구획 설치를 통해 보험료 절감을 가질 수 있다. 즉 요율 적용의 유의사항 중에는 “하나의 건물이 이 할증요율표에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최고의 할증을 그 전부에 대하여 부과한다”라는 기본원칙이 있으므로 건물사용상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 절감이나 연소위험 감소를 위해 용도별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따른 보험료 혜택을 위하여 두 예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	요 율	총보험료
‘가’의 경우	전체 0.1927%	1,192,331 원
‘나’의 경우	다방 0.1927%	862,711 원
사무실	0.1377%	

따라서 전체 건물에서 다방부분이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아닌 경우보다 329,620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.

여기서 방화구획을 좀 더 살펴보자.

방화구획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자립성 있는 간벽, 바닥 및 방화문으로 일정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각기 해당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간벽 및 바닥

(가) 구조

1) 비내력벽 및 바닥의 경우

○ 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

○ 조적조 두께 12cm 이상

2) 내력벽(방화문 포함)의 경우

○ 콘크리트조 두께 12cm 이상

○ 조적조 두께 20cm 이상

(나) 조건

1: 복조 건물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간벽(방화벽)은 지붕면과 양쪽의 외벽면으로부터 50

cm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.

② 풍도(환기, 냉난방용 등의 닥트)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가 자동 방화 담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풍도, 급·배수관, 배전관 및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몰탈로 메워야 한다.

예 2. 국유건물(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,000m²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)

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소공동 30

소유자 : 국가

건물구조 : 세멘벽돌조 슬라브 4층

용도 : 일반 사무실

보험가입금액 : 250,000,000 원

물건 : 일반물건

적용 등지 : 1등지

요건 건물급수 : 3급

기본요율 : 0.273%

계산

○ 적용요율산출

기본요율 : 0.273% (1등지 3급)

○ 화재보험료

250,000,000 원 × 0.273% = 682,500 원 ... ①

특수건물할인 25% 주1)

682,500 원 × 25% = 170,625 원 ②

① - ② = 511,875 원 ③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7%

511,875 원 × 7% = 35,831 원 ④

○ 총보험료 ③+④

511,875 원 + 35,831 원 = 547,706 원

(총납입보험료)

주 1) 특수건물지역(서울시, 직할시(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), 대전시, 전주시) 내에서 국유건물이면서 사무실 용도를 관공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요율이 두 가지가 된다. 즉 국유할인 25%와 관공서할인 10%가 되나 이 경우 할인요율은 국유할인 25%만 적용된다. ④